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1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는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특례 신설(이만희의원안(2))	3

I. 개요

1. 이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1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23.

(3) 회 부 일 : 2025. 6.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적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사회재난 등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 중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타격 받은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을 통

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 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는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특례 신설(이만희의원안(2))

현 행	개정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②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감면율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 2년간 50% -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3년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이전 시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감면율 - (현행과 같음) -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3년간 50%

현 행	개정안
- 그 외 낙후지역으로 이전 시: 10년간 100% + 2년 50% ○ 적용기한: 2025. 12. 31.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다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감면대상: ①×②×③ - 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등 제외한 금액 - ②: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비율 - ③: 위탁가공무역 외 매출비율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에 따른 <u>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이전 시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감면율 -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 2년간 50% -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3년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그 외 낙후지역으로 이전 시: 10년간 100% + 2년 50% ○ 적용기한: 2025. 12. 31.	○ 감면율 - (현행과 같음) -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3년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만희의원안 2025. 2. 19. 발의(의안번호 8280)

현 행	개정안
□ <신 설>	□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71조의3 신설)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이하 “농촌특별재난지역이전기업”) ① 공장시설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전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 제4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

현 행	개정안
	② 농촌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감면율: 최초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2028. 12. 3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부지를 2028. 12. 31.까지 보유하고 2028.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2031. 12. 31.) ○ 사후관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정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후 3년 이내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③ 농촌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이전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신설(안 제71조의3신설) ○ 대상: 농촌특별재난지역이전기업 중 법인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특례: 공장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25. 12. 31. ○ 중복적용 배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과 중복적용 배제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동 세액공제 미적용 ○ 추계과세기 미적용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 관련 최저한세 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만희의원안 2025. 6. 23. 발의(의안번호 11012)

□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
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431호)」(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기업이나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마
찬가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또
는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거나(의안번호 8280호),

내국인이 공장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60조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농촌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하려는 것임(의안번호 11012호).

□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
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
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
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
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 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안번호 8280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을 하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한 본사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업이나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 감면기간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 준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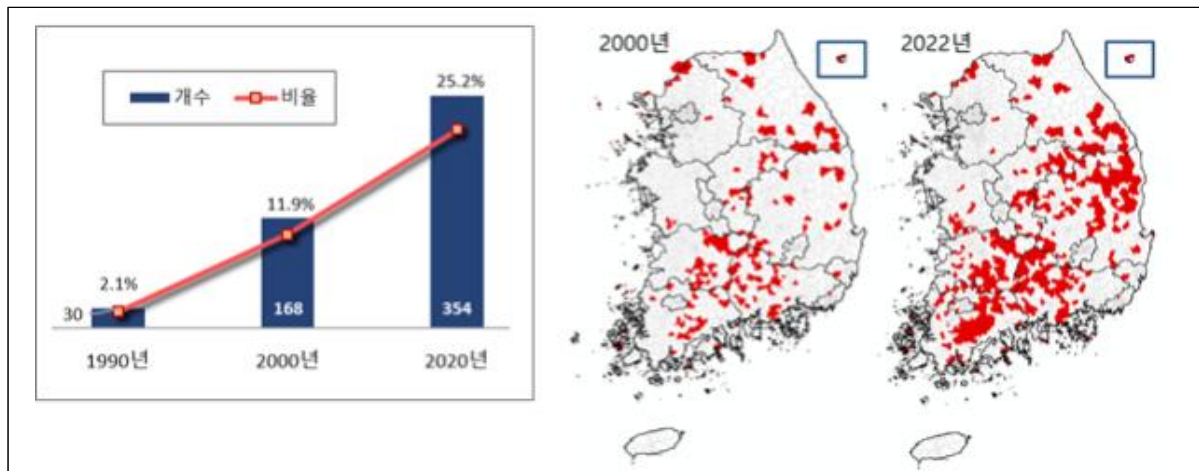
또한, 개정안(의안번호 11012호)은 농촌구조전환지역 외의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초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을 하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편,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분할 산입 특례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각 개정안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는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농촌 이전을 장려하고 농촌소멸 및 수도권 편중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려

는 취지로 보임.

현재 농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심화에 따라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인구 2천명 미만의 읍·면 비중이 1990년 2.1%이었던 것에 반해 2000년에는 11.9%, 2020년에는 25.2%로 증가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이 급증하고 있어 지역 공동화 진행이 빠른 것으로 나타남²⁾.

【인구 2천명 미만 읍·면 현황(2000년~2020년)】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 및 대도시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19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매년 수도권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전국 인구밀도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4. 11.

[수도권 인구 및 인구밀도 현황]

(단위: 천명, 명/km²)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전국	51,765	516	51,836	516	51,745	515	51,673	514	51,713	515
수도권	25,851	2,179	26,021	2,193	26,069	2,196	26,086	2,197	26,190	2,206
수도권 비중	49.94%		50.20%		50.38%		50.48%		50.64%	

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자료: 통계청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52.33%로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5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2,043	2,062	2,224	2,328	2,404
수도권	1,066	1,091	1,175	1,229	1,258
수도권 비중	52.18%	52.91%	52.83%	52.79%	52.33%

주: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이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이 선정된 이후에 조세특례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구 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정기준이나 전체 지정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세수효과 및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임.

기획재정부는 현재 개정안의 문언만으로 어떤 지역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될 것인지 예측이 곤란하여 지정기준 등이 구체화된 이후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둘째,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인구 감소지역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가가 많은 경상도와 전라남도 총 64개 시·군·구 중 42개(67%)가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대부분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소멸지역과 중복될 것으로 보여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 법령 하에서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 분포】

시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구	관할 읍·면	
		개수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8	1.0
인천	강화군, 옹진군	20	2.3
광주	-	-	-
대전	-	-	-
울산	-	-	-
세종	-	-	-
경기	가평군, 연천군	16	1.8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81	9.2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58	6.6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103	11.8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20	13.6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82	20.8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53	17.5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35	15.4
제주	-	-	-
총계	89개	876	100

주: 밑줄 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촌(읍·면)지역이 없는 시·군·구를 의미함

자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

셋째, 개정안(제11012호)에 따르면 농촌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특례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농촌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역시 감면 대상에 해당하게 됨.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농
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경우는 감면대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유사 입법례³⁾ 등을 참고하
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
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
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3)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
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